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60 발의연월일: 2024. 9. 3.

발 의 자:추미애·송재봉·이수진

이병진 · 송옥주 · 박희승

강득구 • 이해식 • 한정애

전용기 · 오세희 · 정춘생

황 희·허 영·정성호

김용민 · 박용갑 · 황정아

김 현 · 김용만 · 정을호

채현일 · 강준현 · 민형배

임미애 · 박해철 · 조인철

황명선 · 이광희 · 김영환

이성유 • 박홍근 의원

(3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다고 명시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 대한민국의 근간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권 회복을 위하여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1919년 4월 11일 수립한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임.

하지만, 친일 세력은 일제 강점기 동안의 친일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기 위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여 임시정부의 상징성을 지우려하고 있음.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임.

왜곡된 친일 행위를 비판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과제임.

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과 공휴일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길이 보전하고자함(안 제2조제2호 신설).

법률 제 호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4월 11일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제2조(국경일의 종류)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2.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u>4월 11일</u>		
<u>2.</u> ∼ <u>5.</u> (생 략)	<u>3.</u> ~ <u>6.</u> (현행 제2호부터 제5		
	호까지와 같음)		